

의안번호	2210067
의 퇴 인	서왕진 의원
회 답 일	2025. 6. 20.
추 계 번호	25A25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발명자 등에게 ①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②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게 명하거나, ③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가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행법 제41조제3항¹⁾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²⁾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되거나 비밀로 취급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금을 방위사업청장³⁾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현행법 제41조제4항⁴⁾과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의2⁵⁾)에 따라 정부가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를 하지 않고 이를 실시⁶⁾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 보상금액은 총판매예정수량에 제품의 판매단가와 점유율·기본율을 곱하여 산출하나,

1)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3) 보상금 결정·지급권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법 제41조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의 선정·관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지급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임

4)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이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7)에 따라 평가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액은 외국에의 특허출원 등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의 종류,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 및 단가와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41조제1항제2호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등이 금지되는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대상 기술의 종류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명시된 “국가전략기술⁸⁾”로 대상 기술을 한정하여 가정하더라도, 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예정수량과 판매단가, 점유율 등을 구체적으로 가정하여야 하나, 국가전략기술의 종류가

「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특허법」 상 “실시”란 제2조에 따라 다음을 의미함

-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7)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특허청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이하 ‘수용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이하 ‘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액등의 산정)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수용 등을 위한 보상금액등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발명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액등의 산정은 각 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8)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을 말하며, 현재 12개 분야 50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광범위하고 이를 활용한 특허의 판매량과 단가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계액을 산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보상 규정은 국방 관련 특허(공격·방어 목적의 설비, 폭발·가열 물질, 발사체 또는 미사일을 위한 장치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처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기 지급된 보상금 사례를 준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 안보와 경제적·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특허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할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자료] 국가전략기술 목록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국가전략기술 목록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①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 고용량, 고속·고대역폭,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데이터 유지/읽기/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재·소자·공정 기술
	②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
	③ 반도체 첨단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④ 전력반도체	■ 탄화규소, 질화갈륨,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안정·분배·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
	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	■ 스마트기기, 첨단모빌리티,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지·감지 기술을 융합, 물리·화학·바이오 정보를 감지·변환하는 장치·부품 기술
	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고휘도·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⑦ 프리폼 디스플레이	■ 기존 경성(Rigid)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 접거나, 늘릴 수 있는 유연·신축 디스플레이 기술
	⑧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고신뢰성·친환경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이차전지	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現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 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
	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반·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이상 400Wh/kg 목표) 및 나트륨이온전지(220Wh/kg 목표)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전지제조 기술
	⑪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안전도·수명 향상 위한 모듈-팩-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
	⑫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친환경 자원회수·재활용 관련 기술
첨단모빌리티	⑬ 자율주행 시스템	■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⑭ 도심항공교통(UAM)	■ 저소음·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성능안전·인증) 기술
	⑮ 전기·수소차	■ 고전압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차세대원자력	⑮ 소형 모듈형원자로[SMR]	■ 고안전(무한광각, 사고저향핵연료), 소형 모듈화 제조(노심부품, 소재 혁신 제조),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
	⑯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 액체금속, 기체,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높은 출구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
첨단바이오	⑰ 합성생물학	■ 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 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⑱ 유전자·세포 치료	■ 유전자 결합보완·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제조 관련 기술
	⑳ 감염병 백신·치료	■ 신·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
	㉑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 바이오·의료 데이터를 수집·생성·통합·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치료·예방·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우주항공·해양	㉒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 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고효율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㉓ 우주 관측·센싱	■ 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인공위성 탑재체(관측·통신·항법)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체계 기술
	㉔ 달착륙·표면탐사	■ 달착륙선·무인이동체·우주선 설계·제작,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운행을 위한 행성 연착륙·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
	㉕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 추력 15,000lbf 이상 고출력·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 터빈 엔진 설계·제조·평가·인증 기술
	㉖ 해양자원 탐사	■ 극지·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희토류, 코발트, 니켈, 망간, 흑연 등) 탐사·채굴 기술
수소	㉗ 수전해 수소생산	■ 전기를 이용해 물(H ₂ O)을 분해하여 연료·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환원 반응)하는 기술
	㉘ 수소 저장·운송	■ 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운송하거나, 극저온 액화(-253℃)하여 저장·공급하는 기술
	㉙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열로 직접 전환하거나,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사이버보안	㉚ 데이터·AI 보안	■ 개인·기업의 중요데이터(개인정보, 산업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
	㉛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공급망 보안)	■ 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추적·복구·예방기술
	㉜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
	㉝ 산업·가상융합 보안	■ 정보보안·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적용하는 보안 기술

국가전략기술		기술 개요
분야	중점기술	
인공지능	㉔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SW/HW) 고도화	■ 인공지능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㉕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인지·판단·추론)	■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㉖ 산업 활용·혁신 AI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㉗ 안전·신뢰 AI	■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외부로부터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
차세대통신	㉘ 5G 고도화(5G-Adv)	■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
	㉙ 6G	■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
	㉚ 오픈랜(Open-RAN)	■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 (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
	㉛ 고효율 5G-6G 통신부품	■ 5G-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
	㉜ 5G-6G 위성통신	■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
첨단로봇·제조	㉝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㉞ 로봇 자율이동	■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
	㉟ 고난도 자율조작	■ 유연관절·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㊱ 인간-로봇 상호작용	■ 로봇과 사람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
	㊲ 가상 제조	■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
양자	㊳ 양자컴퓨팅	■ 양자역학적 특성(양자얽힘 등)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 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SW 기술
	㊴ 양자통신	■ 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
	㊵ 양자센싱	■ 고전 센싱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전·자기장, 빛, 중력 등)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

자료: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